

개정 저작권법으로 비상 걸린 출판계

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전송권으로 논란 일어...시행령 제정이 관건

출판계가 개정된 저작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도서관의 전송권을 명시화한

28조 2항. 이 개정법안이 본래의 취재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는 물론, 출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출판계의 중론이다.

구랍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저작권법' 중 일부 조항이 출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조항은 신설된 28조 2항으로,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도서관에 대해 도서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판계는 이 조항이 도서출판물에 대한 도서관의 무제한 복제와 전송을 보장, 저작권 보호라는 기본 입법취지를 위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조항에 따라 만약 한 도서관에서 디지털 출판물을 전국의 도서관에 전송·복제하게 되면, 출판 인프라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논란 일으킨 도서관 전송권

해당 조항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한 문화관광부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저작권 보호의 예외사항으로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해 8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에는 해당 조항이 도서관의 관내전송만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 11월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전송권이 확대됐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한 실무자는 "관의 전송권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도서관들의 비공식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외부의 요청보다는 저작권의 보호와 전자도서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실무자는 "해당 조항은 상호전송과 관내열람만 허용하고, 출력은 금지하는 선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전까지 마련될 시행령에 명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판계는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열람만 할 수 있겠느냐"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늘어나면 관내 출력이 이



지난해 8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장면.

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저작권위원회 김중수 부위원장은 "불법 복제·전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해당조항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안된다면, 출판물의 다운로드와 출력을 금지하기 위해 트래킹 장치(복제기록보존장치)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협'의 고흥식 차장은 "해당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이미 디지털화된 도서와 종이책 형태의 도서를 디지털화해서 전국의 도서관에 전송·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경우, 전국 2백여개의 대학도서관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출판계 내부에서는 이 경우 도서관 수요에 의존하는 학술·전문도서 출판사들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출판계의 우려에 대해 도서관계의 입장은 다르다. 일반 도서의 경우, 디지털화하는 데 드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 문제가 걸려 디지털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출판물은 정부간행물과 저작권이 소멸된 고문

